

Fellow 회원 운영 규정

제정 : 2015년 2월 이사회

제 1 조 정 의

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문, 기술, 행정,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탁월한 업적과 지대한 봉사를 한 분들에게 드리는 명예 회원임 (ASME의 Fellow 개념과는 다름)

제 2 조 기본자격 (60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)

- 1) 우리학회 정회원으로써 20년 이상 활동한 자
- 2) 우리학회 임원활동을 10년 이상 역임한 자
- 3) 우리학회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한 자
- 4) 우리학회 발전을 위하여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
- 5) 그 외에 학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한 자

제 3 조 선정방법

- 1)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 퇴임 시 자동으로 Fellow 회원이 된다.
- 2) 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단에서 이사회 토론을 거친 후 Fellow 회원으로 선정한다.
- 3) 기타 기본자격을 갖춘 회원의 경우에는 회장단 혹은 이사회에서 발굴하여 이사회에 상정한 후 2/3 찬성을 얻을 경우 Fellow 회원으로 선정한다.
- 4) Fellow 회원은 매년 1회 12월 중에 선정한다.

제 4 조 대우 및 의무

- 1) Fellow 회원의 경우 춘/추계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 등록비를 면제 한다.
- 2) Fellow 회원이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혹은 소음 진동 학회지에 해설 및 기타 글을 작성할 경우 저자 옆에, Fellow Member라고 표기한다.
- 3) Fellow 회원의 경우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 학술대회 시 좌장을 본다.
- 4) Fellow 회원이 30명 이상 될 경우에 학술대회 시 Fellow Session을 구성하여 학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.
- 5) Fellow 회원으로 선정 된 자는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